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83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학영·조 국·임호선

김성환 • 윤호중 • 박정현

진선미 • 정혜경 • 이정문

정준호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전단 중 "임금의"를 "임금(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전의 평균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	6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u>임금의</u> 총액을 그	임금(지급되어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하는 임금을 포함한다)의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